장애인전용주차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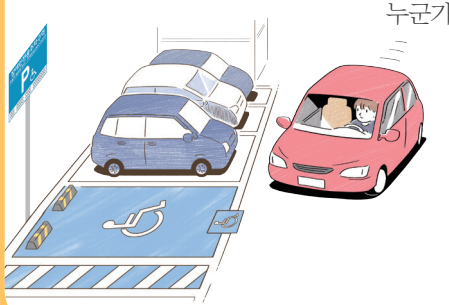
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
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
설치되는 편의시설이며,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
법률로 정한 구역입니다.

신고방식

안전신문고, 국민 신문고,
문서(우편, 전자메일, 전자문서 포함),
팩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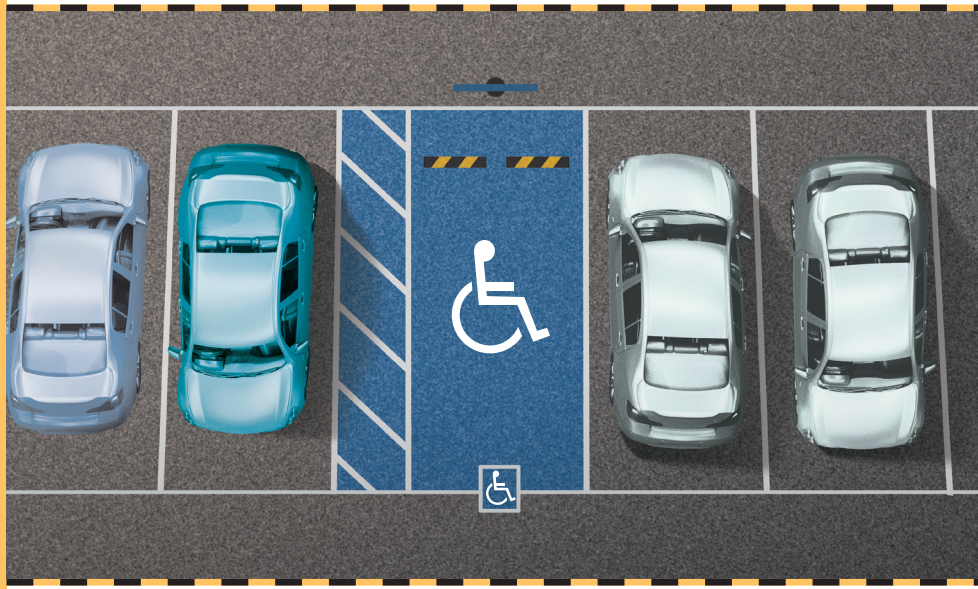
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
누군가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.



나와 다름을
이해하고 존중하는
따뜻한 사회를 위해
멈춤 어떨까요?

함께하는 첫걸음의 시작

장애인 전용주차구역



보건복지부

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
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

Movable/Accessible/Usable
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
Amenity Technical Assistance Center For The Disabled,etc.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위반 과태료

주차위반

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는 경우 등
=> **과태료 10만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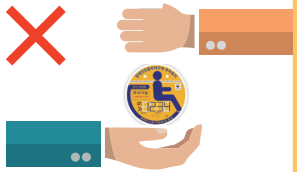


보행장애인 미탑승

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
=> **과태료 10만원**
+ **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**

표지부당사용

표지의 대여, 양도, 위변조등
=> **과태료 200만원**
+ **주차표지회수 및 재발급제한**



사망, 차량변경, 표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
표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반납대상임

주차방해 행위

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두는 행위
이중주차 등으로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
방해하는 행위
=> **과태료 50만원**

장애인전용 주차표지

아래 표지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**주차가능 표지를 부착**하고,
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.

사용 가능 표지

주차가능 표지 중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



<본인 운전용>



<보호자 운전용>

사용 불가 표지

주차불가 표지, 구형주차표지등



<구형표지>



<주차불가표지>